

본 지침은 방역당국 지침 및 유·초·중등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대학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라며 지역 확산 정도에 따라 **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방역당국의 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지침은 **방역당국의 각종 지침을 대학 현장에 맞게 해설한 것으로**, 방역당국의 지침이 개정되는 등의 사유로 방역당국 최신 지침과 동 안내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최신 지침을 우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2023.6.1.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적용·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31.

교 육 부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제8판	제9판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인 간 주의 권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심각→경계)에 따라 5일 격리 권고
학내 방역관리체계	대학 일상회복 지원단 운영	삭제 (자율적 운영 권고)
학교행사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삭제 (자율적 운영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 (23.1.30.~) ▶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의 실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 (23.6.1.~) ▶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 확진자 추가 ▶ 대중교통(통학버스 등),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 착용권고
<p>▣ 청서 부분을 제외한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8판과 동일하게 적용 : 소독·환기, 식당 및 기숙사 관리, 기숙사 내 격리실 설치·운영,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등</p>		

목 차

I. 대응 기본방향	1
II. 대학 일상 관리	2
1. 학내 환경 관리(공통)	2
2. 학내 시설별·상황별 관리	2
III. 상황 발생 시 관리	3
1. 유증상자 발생 시	3
2. 확진자 발생 시	3
참고 생활방역 세부수칙 주요사항(발췌)	4

I

대응 기본방향

-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 → ‘경계’) 및 **‘온전한 일상 회복 전환**(6.1.~) 기조에 맞춰 **각급 학교의 일상회복 및 방역부담 최소화 지원**
 - ※ 방역당국의 지침을 기본 적용하면서 현 상황에 맞게 대학 방역지침 완화

<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주요 내용(‘23.6.1.~) >

- 격리 권고 전환(7일 의무 → 5일 권고)
- 의료기관(의원), 약국 등 실내 마스크 전면 권고로 전환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입소자(입소시)는 유지

단계 하향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 조기완화

분야	현행	변경 (심각→경계)	시행일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5일 권고 전환	6.1. (경계 하향 시)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의원, 약국 권고 전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	
감염취약 시설 보호	입소자(입소 시), 종사자(주 1회) 선제검사(PCR)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금지 (방역수칙 준수)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허용 (방역수칙 준수)	
검역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당초계획 유지)	

II

대학 일상 관리

1

학내 환경 관리(공통)

- (소독·환기) 빈번 접촉 장소, 다수 밀집 장소 등에 대한 **소독·환기***는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 **감염 위험요인 관리**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 참고
 -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 (방역물품) 감염병 위기 단계·상황을 고려하여 대학 내 시설에 **최소 기준 수량*** 이상의 방역물품을 비치
 - *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시 수준 비축·유지

2

학내 시설별 · 상황별 관리

- (강의실) 학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해제하거나 대학별 별도 기준 설정 가능
- (기숙사) 개인 방역 준수 및 환기·소독 등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
 - 유증상자가 '음성' 확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 조치가 어려운 경우 1인실 사용 권고
- (교내 식당) 시설·기구 청소·소독, 식사시간 주기적 환기, 식사 전 손 소독 등 식사지도,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및 급식 위생관리 철저
 - * 종사자 격리 대비 대체인력 운영 및 관리
- (학교 행사)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외에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참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중대분) >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상기 사항은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9판)」,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2판)」 참고

Ⅲ

상황 발생 시 관리

1

유증상자 발생 시

- (대학)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KF80 이상) 마스크 착용 후,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증상자에게 배포 및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 (학내 구성원)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의료기관 방문 또는 자가검사*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RAT·PCR) 또는 보건소(PCR)에서 확진 검사 실시

2

확진자 발생 시

- (대학)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철저
 -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 확진(본인 또는 동거인)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유증상에 따른 검사·진료자 등 포함)
 -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 확진 또는 검사·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확진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 (근거)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 ※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 마스크(또는 이와 동급) 상시 착용 권고

3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

< 개인방역 보조수칙 : 코로나19 확진자 >

①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코로나19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되도록 도보나 개인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빠른 회복과 전파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안내하는 사항을 잘 준수합니다.
-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② 다른 가족을 위해 집에서 이렇게 하세요.

- 코로나19 확진자는 독방을 사용하고, 방에서 나올 때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식사는 혼자 합니다.
- 방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을 매일 한 번 이상 소독 티슈로 닦습니다.
- 밥그릇 등 식기, 수건, 침대, 컴퓨터는 가족과 따로 씁니다.
- 가족 모두 알코올 소독제나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소독합니다.

③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 외출하는 동안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씁니다.
-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의 방문은 자제합니다.
-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 만나는 사람과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등의 밀접한 접촉을 자제합니다.

④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및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 심호흡,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합니다.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⑤ 아플 때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으세요.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성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확진자가 발열, 기침,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을 때에는 진료를 받으세요.
- 건강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낀다면 의료기관(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⑥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여 소독한 후 보관하며, 격리 권고 기간 종료 후 배출합니다.
- * 확진자의 폐기물 처리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최신판을 참고하세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관리 의무)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 게시 및 안내 의무**
-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했던 경우
-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밀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가능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p>예외 대상자</p>	<p>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p> <p>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부과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월 미만인 영유아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예외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응급 구조활동 등)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